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31 선고 2018가단509250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10. 17.

판결 선고2018. 10. 3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는 174,244,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7.부터 2018. 2. 2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4. 26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5. 11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204,000,000원을 한도로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가.항기재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피고 A는 피고 B에게 위 제1의 나.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 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권순건

별지